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의	안	2017
벍	ゔ	2016 -

제출연월일			2016. 1
제	출	자	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장애인근로사업장지붕과 제1주차장, 제2주 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원면 복지영농조합에서 부지 사용 신청이 있어
- 타당성 검토결과 태양광발전소시설로 인한 주차장 기능은 현황과 같이 유지하고 있으며, 또한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잔여 부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어 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.

2. 재산의표시

위 치	면 적	태 양 광 설치면적	용량	사용허가신청자
남상면 대산리 1546(장애인근로사업장)	1,236m²	618m²	90kw	신원1복지영농조합 대표 곽준섭
남상면 대신리 1564(제1주차장)	4,387m²	576m²	90kw	신원2복지영농조합 대표 박문규
남상면 대신리 1603(제2주차장)	3,089m²	569m²	90kw	신원3복지영농조합 대표 김운용

3. 관련법규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
-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제4항
-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

4. 설치계획 도면 : 따로 붙임